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정책기획과



시정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정계획 홍보 및 자료제작, 공약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시정목표 현판교체, 중회의실 유지관리 등		
사업목적	민선9기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시민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이행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47,400	236,400	96,400	0	0	140,000	-1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7,400	236,400	96,400			140,000	-1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	
시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시정계획 홍보 자료 제작 : 경정(46,000,000원)-기정(36,000,000원) · 주요업무 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제작 : 경정(22,000,000원)-기정(16,000,000원) ·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 : 15,000,000원 ·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100,000원*35명*3회 · 공약 시민평가단 안전심의 자료집 제작: 1,000,000원 · 중회의실 유지관리 : 경정(4,500,000원)-기정(2,000,000원)	= 10,000 = 6,000 = 15,000 = 10,500 = 1,000 = 2,500	
	401-01 시설비	· 공공청사 시정목표 간판 정비 및 교체(20개소) : 95,000,000원	= 95,000	

□ 예산요구 사유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시정계획 및 시정목표 홍보비용과 시정목표 간판 교체에 따른 제반경비 필요
-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의 방향 설정 및 내용 점검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
- 18세 이상 김포시민 35명(예비인원 포함) 내외 구성, 공약 조정(변경·통합 등) 심의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시정 홍보 자료와 업무보고 책자 등 자료제작비용 추가편성
- 민선9기 시정목표 변경에 따라 공공청사 간판, 중회의실 백월 정비 및 교체 비용 추가편성
-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 회의참석수당(3회), 심의자료 제작비용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시정 홍보 및 공공청사 간판 정비 추진계획
 - 2026. 7. ~ 12. : 민선9기 시책 홍보 자료 및 업무보고 책자제작
 - 2026. 9. ~ 11. : 민선9기 시정목표 공공청사 간판교체(20개소)
-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 추진계획
 - 2026. 11. :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 계약 체결
 - 2026. 11. ~ 12. : 공약 시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 (회의 3회 개최)
 - 2027. 1. : 시민평가단 운영 결과 보고
- 중회의실 백월 교체 작업
 - 2026. 9. : 중회의실 백월 디자인 교체 및 민선9기 시정목표 아크릴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 민선8기 2주년 홍보영상 및 PPT 자료, 책자제작(39,483천원) · 시정계획 및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10,670천원) · 중회의실 물품구입 및 운영(3,740천원)
2025	· 2025년 민선8기 3주년 홍보영상 및 PPT 자료제작 및 홍보책자 제작(30,991천원) · 2025년 시정계획 의회업무보고 및 주요업무보고 책자제작(8,031천원) · 중회의실 물품구입 및 운영(2,182천원)
2026	· 2026년 민선8기 시정계획 설명자료(9,360천원) · 2026년 시정계획 의회업무보고 책자제작(8,613천원) · 중회의실 물품구입 및 운영(45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4,720	66,935	-	7,785	
2025	247,400	212,493	-	34,907	
2026	96,400	58,789	-	37,61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민호	담당자	행정7급 박미정 행정7급 정소영 행정8급 함명현	전화	2052 2055 2054
-----	-------	----------	-----	----------------------------------	----	----------------------

의정비심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6. 7.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회 운영			
사업목적		2027년~2030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2항
		제34조(의정비심의회 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5조(의정비심의회 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000	0	0	0	2,000	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				2,000	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의회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 의정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10명*2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대 10명의 위원에 대한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의정비심의회 개최 및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결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 의정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2,614천원)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6	· 해당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8,200	36,603	-	1,597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민호	담당자	행정8급 김정관	전화	2053
-----	-------	----------	-----	----------	----	------

시·도의원 정담회 운영

사업기간	2026. 7.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도의원 정기회의 운영		
사업목적	지역 발전 및 주요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시·도의원 협의 체계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조제1항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800	0	0	0	1,800	1,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00				1,800	1,8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의회협력강화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 시·도의원 정담회 운영 : 9,000원*20명*10회	= 1,800	

□ 예산요구 사유

- 민선 9기 시정의 협치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도의원 정기회의 운영 필요
- 김포시-시·도의원 협조 체계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 및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7 ~ 12. : 시·도의원 정담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시·도의회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지급(2,774천원)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6	· 해당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00	2,774	-	1,226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민호	담당자	행정8급 김정관	전화	2053
-----	-------	----------	-----	----------	----	------

성과평가 운영(도비)

사업기간	2026. 7.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군종합평가 정량·정성지표 122개		
사업목적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김포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0,000	0	0	0	30,000	30,000	
국비		0					0	
도비		30,000				30,000	30,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성과평가 운영 (도비)	303-01 포상금	·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 30,000,000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목표달성 동기부여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 시군종합평가 결과(실적향상 시군)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2025 시군종합평가 본평가
- 2026. 06. ~ 2026. 08. : 결과발표 및 상사업비 교부(도→시)
- 2026. 09. : 예산편성 후 포상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 평가 교육·워크숍 및 회의 운영비 집행 : 25,760천원 · 2024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성과시상금 집행 : 67,860천원 * 세부사업 '성과평가 운영'에 도비 포함하여 편성 후 집행
2025	· 2025년 평가 교육 및 회의 운영비 집행 : 19,999천원 · 2025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성과시상금 집행 : 79,590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0,000	-	100,000	-	
2025	100,000	99,590	-	410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592
-----	-------	------------	-----	----------	----	------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도비)

사업기간	2026. 9. ~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사업목적	2026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따른 성과 포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김포시 소속 담당관·과·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0,000	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10,000				10,000	10,000	
시비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303-01 포상금	·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 10,0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따른 성과 포상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시상금(도비 10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경진대회 사례 발굴 및 제출
 - 2026. 05. : 사례 발표 자료 제작 및 준비
 - 2026. 06. : 대회 참가 및 ‘우수상’ 선정
 - 2026. 09. : 대회 관련부서 성과 포상(시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70상상팀장 조성래	담당자	행정7급 백은지	전화	2792
-----	-------	------------	-----	----------	----	------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4-8번지 일원
사업규모	김포 비행장 G-107 주변 100km 이내 소음대책지역		
사업목적	군비행장·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상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6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 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 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744	64,479	0	0	0	64,479	33,735	
국비	30,744	64,479				64,479	33,735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4,479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301-14 기타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 보상대상자 보상금(210명) : 64,478,860원 =	64,479	

□ 예산요구 사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방부 환경소음팀-2798(2026.6.19.)호에 따른 군소음 피해 보상금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 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6. 04. ~ 2026. 05. :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 통지
 - 2026. 06. ~ 2025. 07. : 예산 교부(국방부 → 김포시) 및 추경예산 편성
 - 2025. 07. 31. : 군소음보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지급대상자 147명, 지급액 40,590,990원
2025	· 지급대상자 139명, 지급액 30,744,040원
2026	· 지급대상자 210명, 지급액 64,478,86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591	40,591	-	-	
2025	30,744	30,744	-	-	
2026	64,479	64,479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군관협력팀장 나태웅	담당자	군관협력팀장 나태웅	전화	2785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예산법무과
기 정 액	392,700,874천원	요 구 액	1,291,03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1,608,095	1,299,133	8,100	0	0	1,291,033	-308,962	
경상적세외수입	1,600,000	1,290,000	0	0	0	1,290,000	-310,000	
사업수입 /배당금수입 ◎김포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1,600,000	1,290,000	0	0	0	1,290,000	-310,000	· 세입내용 : 김포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 증감사유 : 도시공사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른 배당금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8,095	9,133	8,100	0	0	1,033	1,038	
기타수입 /그외수입 ◎보통e 제휴카드 캐시백	8,095	8,259	8,100	0	0	159	164	· 세입내용 : '25년 보통e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수입 · 산출내역 : 보통e카드 캐시백 내역 · 증감사유 : 예상치와 차액 부분 현행화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5년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e나라도움)	0	874	0	0	0	874	874	· 세입내용 : '25년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e나라도움) · 산출내역 : 874,970원 · 증감사유 : '25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2026. 5.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탐e) 운영		
사업목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재발 방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5제1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전자정부법	제72조제3항제1호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5,232	0	0	0	5,232	5,23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32				5,232	5,23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32	
예산편성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 5,232,000원	= 5,232	

□ 예산요구 사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 비용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보탐e 부정수급 패턴 고도화에 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 편성
※ 분담금 산정 기준 : '25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수, 민간사업계획금액, 예산규모 고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5. : 위·수탁 계약 체결(김포시↔개발원)
 - 2026. 10. : 분담금 납부
 - 2026. 10. ~ 12. :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예산2팀장 김선아	담당자	행정7급 장재혁	전화	2108
-----	-------	-----------	-----	----------	----	------

지방공기업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		
사업목적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제2항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1,629,281	23,263,172	21,986,263	0	0	1,276,909	1,633,89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629,281	23,263,172	21,986,263			1,276,909	1,633,89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6,909	
지방공기업 지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 건 비】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 1,061,411	
		【운 영 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4대보험 부담금 등	= 215,498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증액
 - 2026년 총 인건비 인상률이 3.5%(공무원 인상률 동일)로 2026년 1월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 인건비 등 소요액 증가 및 김포시 공무원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3.5% 적용 및 이에따른 기타 제수당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대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경상전출금(인건비, 운영비): 20,966,587천원 - 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 207,206천원
2025	- 경상전출금(인건비, 운영비): 21,310,603천원 - 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 318,678천원
2026	- 경상전출금(인건비, 운영비): 21,787,211천원 - 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 199,05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173,793	20,587,764	-	586,029	
2025	21,629,281	21,629,281	-	556,007	
2026	21,986,263	21,986,263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담당자	행정7급 최상진	전화	2042
-----	-------	------------	-----	----------	----	------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기금 전출금 12.9억		
사업목적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 배당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000,000	1,290,000	0	0	0	1,290,000	-3,7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00	1,290,000				1,290,000	-3,71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90,000	
내부거래지출 (예산법무과)	702-01 기금전출금	·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 : 1,290,000,000원	= 1,29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발전으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재원 조달을 대비하여 신설한 기금에 대해, 안정적인 조성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 전출금 편성 요구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도시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 배당금 적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1. :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 2025. 4. : 기금 적립(50억 원)
 - 2026. 2. : 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3회)
2025	·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1회) ·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 편성 및 적립(50억 원)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5,000,000	5,000,000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예산1팀장 강민정	담당자	행정7급 김한얼	전화	2046
-----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차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사업목적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계 간 여유자금 통합 운영·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약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약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약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① 통합계정으로의 예약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통합계정에 예약한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8,000,000	0	25,204,211	0	0	-25,204,211	-8,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00,000	0	25,204,211			-25,204,211	-8,0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4,211	
내부거래지출 (예산법무과)	705-01 예수금원금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일반회계 3차 예수금) : 경정(0원) - 기정(25,204,211,000원)	= -25,204,211	

□ 예산요구 사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의 원금 상환 시기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3차 예수금 원금 상환액을 감액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9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차 예수금 320억 원 중 25,204,211천 원을 상환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3차 예약금 약정조건 변경에 따른 상환 시기 조정으로 기편성된 원금 상환액 25,204,211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예수 (400억 원)
- 2023. 1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차 예수 (400억 원)
- 2024. 1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예수금 원금 조기상환(100억 원)
- 2025. 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예수금 원금 조기상환(80억 원)
- 2025. 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차 예수 (320억 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 11.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예수금 원금상환 10,000,000천 원
2025	· 2025. 05. 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예수금 원금상환 8,000,000천 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000,000	10,000,000	-	-	
2025	8,000,000	8,000,000	-	-	
2026	25,204,211	-	-	25,204,21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예산1팀장 강민정	담당자	행정7급 송남희	전화	2047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정보통신과
기 정 액	256,617천원	요 구 액	△251,99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11	13	11	0	0	2	2	
임시적세외수입	11	13	11	0	0	2	2	
기타수입 /그외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	11	13	11	0	0	2	2	· 세입내용 : 2025년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 포인트 환급분 · 산출내역 : 13,000원 · 증감사유 : 2025년 대비 환급액 증가로 증액

디지털배움터

사업기간	2026. 6. ~ 2026. 12.	사업위치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도서관, 경로당 등
사업규모	디지털배움터 및 디지털체험존 운영		
사업목적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실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1항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전문인력의 발굴·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표상	
	해당조례	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시장은 시민의 존엄·가치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의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248	28,000	280,000	0	0	-252,000	20,752	
국비			224,000			-224,000		
도비			28,000			-28,000		
시비	7,248	28,000	28,000				20,75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00	
디지털배움터	201-01 사무관리비	· 디지털배움터 운영 : 경정(0원) - 기정(280,000,000원)	= -280,000	통계목 변경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디지털배움터 운영 : 경정(28,000,000원) - 기정(0원)	= 28,000	

□ 예산요구 사유

- 디지털 사회의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구직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부터 디지털 배움터 사업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 지자체 직접 수행 방식(기초지역자율계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운영 방식(계약 및 집행)이 광역 지자체 수행 방식(광역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반영분 감액
- 운영방식 전환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집행함에 따라, 시 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존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2026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공고(경기도)
 - 2026. 5. : 2026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일괄 계약(경기도)
 - 2026. 6. ~ 12. : 디지털배움터 교육 실시
 - 2026. 9. : 분담금 납부(김포시 → 경기도)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디지털배움터 교육 실시(143개 교육과정 3,824명 교육수료) · 디지털배움터 교육장(6개소) 및 디지털체험존(1개소) 운영
2025	· 디지털배움터 교육 실시(365개 교육과정 3,971명 교육수료) · 디지털배움터 교육장(6개소) 및 디지털체험존(1개소) 운영
2026	· 디지털배움터 교육 실시(36개 교육과정 574명 교육 중) · 디지털배움터 교육장(7개소) 및 디지털체험존(1개소)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900	7,900	-	-	
2025	7,248	7,248	-	-	
2026	280,000	-	-	280,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한상진	담당자	방송통신7급 이성호	전화	2083
-----	-------	------------	-----	------------	----	------

정보보호 강화

사업기간	2026. 9. ~ 2026. 10.	사업위치	정보통신과
사업규모	인터넷디스크 서버 1식		
사업목적	내구연한 경과 및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서버 도입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3조 제1항 제7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변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컴퓨터 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16,393	242,401	233,401	0	0	9,000	126,0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6,393	242,401	233,401			9,000	126,00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정보보호 강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인터넷디스크 서버 구매 : 경정(20,000,000원*1대) - 기정(11,000,000원*1대)	= 9,000	

□ 예산요구 사유

- 운영체제(CentOS) 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 패치 적용 불가로,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및 침해사고 대응 공백 우려
- 기존 도입한(2017년) 인터넷디스크 서버의 내구연한(6년) 경과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확정 이후 AI관련 서버 가격이 상승하여 예산 증액('26년 본예산 대비 1.5~2배 이상)
-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인터넷디스크 장비 용량 2배 확대(8TB -> 16TB)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5.11.	-	-	-	-	-	-	2025.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기본설계 및 추진계획 수립
- 2026. 08. ~ 2026. 09.: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업발주
- 2026. 09. ~ 2026. 10.: 인터넷디스크 신규 장비 교체 및 안정화 작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백신 프로그램 보급(서버 20조, PC 2,000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집합교육 실시(총 4회) -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매(20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총 2식 ※ 이월사업
2025	- 백신 프로그램 보급(서버 20조, PC 2,000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집합교육 실시(총 4회) - 랜섬웨어 탐지 및 분석 시스템 라이선스 360조 구매 -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매(20조) -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사업 추진
2026	- 백신 프로그램 보급(서버 20조, PC 2,000조) - 랜섬웨어 탐지 및 분석 시스템 라이선스 500조 구매 - 망연계 솔루션 1조 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3,710	100,082	-	3,628	
2025	116,393	113,921	-	2,472	
2026	233,401	182,489	-	50,912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장 박종대	담당자	전산8급 조백민	전화	2378
-----	-------	------------	-----	----------	----	------

행정전산장비 보급

사업기간		2026. 9. ~ 2026. 11.	사업위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규모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보급			
사업목적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05,500	1,233,960	902,300	0	0	331,660	331,6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5,500	1,233,960	902,300			331,660	928,4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1,660	
행정전산장비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행정전산장비 구매 : 경정(1,203,960,000원) - 기정(872,300,000원)	= 331,660	

□ 예산요구 사유

- MS사의 윈도우10 OS지원 종료에 따라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의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나, 현재 보유중인 PC 상당수가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최소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장비(내용연수 6년 초과)로 전면 교체 시급
- 본예산 수립 시점 대비 PC 구매 단가의 급격한 상승(130만원 → 206만원)으로 인한 구매 부족분 (161대) 예산 추가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AI 관련 부품 수요량 증가, 공급망 불안, 환율·원자재 인상 등으로 인해 RAM·SSD·CPU 등 핵심 부품의 가격이 2025년 하반기 대비 2~4배까지 급등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개정으로 구매금액별 최대 할인율 감소(기존 20% → 현재 10%)
- 교체 대상 물품 : 일체형컴퓨터(내구연한: 6년, 사용연수: 6~7년, 사용위치: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정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03. : 전 부서 듀얼모니터 수요 조사(누적 요청 수량 : 123대)
- 2025. 09. ~ 2025. 10. : PC 교체 없이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추진(1,840대)
 - ※ 업그레이드 사양 미달 577대 제외
- 2025. 11. ~ 2025. 12. : 2026년 본예산 수립 (컴퓨터 671대, 듀얼모니터 150대)
- 2026. 01. ~ 2026. 04. : 행정전산장비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
 - ※ PC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컴퓨터 510대, 듀얼모니터 150대 구매 및 교체·보급 완료('26. 8.)
- 2026. 09. ~ 2026. 12. : 행정전산장비 추가 구매 및 교체 보급(3회 추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신규 직원 전산장비 보급 및 노후·고장 컴퓨터 교체(233대)
2025	· 신규 직원 전산장비 보급 및 노후·고장 컴퓨터 교체(230대)
2026	· 신규 직원 전산장비 보급 및 노후·고장 컴퓨터 교체(510대), 듀얼모니터 보급(15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5,500	304,208	-	1,292	
2025	305,500	305,217	-	283	
2026	902,300	899,816	-	18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장 이지은	담당자	전산8급 이아라	전화	2383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세정과



(세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세정과
기 정 액	263,635,373천원	요 구 액	12,961,95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0	16,305	0	0	0	16,305	16,305	
임시적세외수입	0	16,305	0	0	0	16,305	16,305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2025년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 템 운영관리)	0	2,499	0	0	0	2,499	2,499	· 세입내용 : 25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정산 반환금 · 증감사유 : 2025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반영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2025년 지 방세정보시스 템 운영관리)	0	13,806	0	0	0	13,806	13,806	· 세입내용 : 25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산 반환금 · 증감사유 : 2025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반영
보조금	20,000	27,211	0	0	0	27,211	7,211	
시·도비보조금등	20,000	27,211	0	0	0	27,211	7,211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2026년 지방세 정운영 평가 상 사업비	20,000	13,270	0	0	0	13,270	-6,730	· 세입내용 : 25회계연도 사업비 운영 평가 결과 (노력상) 교부 · 증감사유 : 전년도는 세정과 일괄 편성·집행 → 올해는 부서별 정원 기준 안분 편성· 집행 방식으로 변경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2026년 세수증 대활동비	0	13,941	0	0	0	13,941	13,941	· 세입내용 : 26년 지방세수증대활동비 교부 · 증감사유 : 전년도는 취득재산세과 일괄 편성·집행 → 올해는 부서별 정원 기준 안분 편성· 집행 방식으로 변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82,952	12,918,436	0	0	0	12,918,436	2,335,485	
보전수입등	10,582,952	12,918,436	0	0	0	12,918,436	2,335,485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 액	6,572,821	8,518,261	0	0	0	8,518,261	1,945,441	· 세입내용 : 25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자산관리과-12261(2026.4.16.)호 · 증감사유 : 25년도 결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영
전년도이월금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	4,010,131	4,400,175	0	0	0	4,400,175	390,044	· 세입내용 : 25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자산관리과-12261(2026.4.16.)호 · 증감사유 : 25년도 결산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영

지방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운영

사업기간		2026.09. ~ 2026.1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표창 및 상사업비 지원		
사업목적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통한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0,000	13,270	0	0	0	13,270	-6,730	
국비		0					0	
도비	20,000	13,270				13,270	-6,73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70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세정평가 우수 공무원 연찬회 추진 : 491,481원*27명 =	13,270	

□ 예산요구 사유

-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성과평가 우수 시·군 선정(2그룹 노력상)에 따른 상사업비 운영
- 세정평가 우수 공무원 연찬회 추진
 - 목적 : 세정평가 우수 공무원 연찬회 추진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 대상 : 세정업무담당자 27명
 - 내용
 - 업무 연찬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및 세수 증대 기여
 -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회계연도 노력상 수상에 따라 상사업비(30,000천원) 교부로 예산 편성
- ※ 부서 정원 기준으로 안분하여 편성함(세정과: 13,270천원, 취득재산세과: 16,73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27. :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2그룹 노력상) 수상
- 2026.04.13.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교부
- 2026.04.21. :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사용 계획 제출
- 2026.09 ~ 12. : 상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4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1그룹/도약상)에 따른 연찬회 추진
2026	·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5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2그룹/노력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20,000	19,987	-	13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세정과	세정팀장 최은정	담당자	전산7급 이승환	전화	2686
-----	-----	----------	-----	----------	----	------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

사업기간		2026.09. ~ 2026.1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경기도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사업목적		지방세정 업무연찬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시 세수 목표액 달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3,941	0	0	0	13,941	13,94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941				13,941	13,94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941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지방세 발전 연찬회 개최 : 516,330원 * 27명	= 13,941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경기도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교부(31,521천원)
 - ※ 세정과 : 13,941천원, 취득재산세과 : 17,580천원(부서 정원에 따른 교부금 안분 편성)
- 지방세 발전 연찬회 개최
 - 목적 : 지방세정 업무 연찬을 통한 업무 노하우 공유 및 직원 사기 진작
 - 대상 : 세정업무담당자 27명
 - 내용
 - 업무 연찬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및 세수 증대 기여
 -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세수증대활동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 ※ 부서 정원 기준으로 안분하여 편성함(세정과: 13,941천원, 취득재산세과: 17,58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5. : 2026년도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교부(31,521천원)
 - 2026. 8. : 도비보조금 사용계획 수립
 - 2026. 9. ~ 12. : 추진계획에 따른 세수증대활동비 예산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2025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135	8,135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세정과	세정팀장 최은정	담당자	전산7급 이승환	전화	2686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취득재산세과



(취득재산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취득재산세과
기 정 액	153,337,452천원	요 구 액	34,73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32,209	424	0	0	0	424	△31,785	
임시적세외수입	32,209	424	0	0	0	424	△31,785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6년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여입분	32,209	424	0	0	0	424	△31,785	· 세입내용 : 지방세 미청구 환급금 중 2026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환급금 · 산출내역 : 2026년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분 1건 · 증감사유 : 2026년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분 발생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운영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지방세 발전 연찬회 개최			
사업목적		경기도 지방 세수증대활동 재정지원을 통한 세입 징수 목표액 달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7,993	17,580	0	0	0	17,580	17,580	
국비		0					0	
도비	17,993	17,580				17,580	-413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580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지방세 발전 연찬회 개최 : 606,206원*29명 =	17,580	

□ 예산요구 사유

-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정 업무 능력 향상 및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방세 발전 연찬회 추진
- 지방세 발전 연찬회 개최
 - 목적 :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기여
 - 내용 :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직무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세수증대활동비 31,521천원을 교부받아 세정과와 취득재산세과의 정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안분하여 편성
 - 2025년에는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취득재산세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세무업무 추진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분리 편성
- ※ 부서별 정원 : 세정과 23명(13,941천원), 취득재산세과 29명(17,58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5. : 2026년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운영 보조금 교부
 - 2026. 8. :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사용계획 수립
 - 2026. 9. ~ 12. : 추진계획에 따른 연찬회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2025	· 2025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9,903	9,903	-	-	
2025	17,993	17,993	-	-	
2026	-	-	-	-	7.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장 함 혁	담당자	행정8급 김선경	전화	2646
-----	--------	-------------	-----	----------	----	------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세무업무 담당직원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 및 상사업비 지원(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 대한 시·군평가)			
사업목적		지방세정 운영 성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6,730	0	0	0	16,730	16,730	
국비								
도비		16,730				16,730	16,730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730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세정평가 우수 공무원 연찬회 추진 : 576,896원*29명 =	16,73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 시·군 선정(2그룹/노력상)에 따른 상사업비 운영
- 세정평가 우수 공무원 연찬회 추진
 - 목적 :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기여
 - 내용 :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직무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김포시 노력상 수상 실적에 따라 상사업비 30,000천원을 교부 받아 세정과와 취득재산세과의 정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안분하여 편성
- ※ 부서별 정원 : 세정과 23명(13,270천원), 취득재산세과 29명(16,73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27. :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2025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2그룹/노력상)
 - 2026. 3. 31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교부
 - 2026. 4. 21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사용계획 수립
 - 2026. 9. ~ 12. :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5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2그룹/노력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장 함 혁	담당자	행정8급 김선경	전화	2646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징수과



(징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징수과
기 정 액	23,832,910천원	요 구 액	2,721,08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14,400,000	12,645,586	10,000,000	0	0	2,645,586	△1,754,414	
경상적세외수입	0	45,263	0	0	0	45,263	45,263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공매배당금 기타이자수입	0	45,263	0	0	0	45,263	45,263	· 세입내용 : 공매배당금 이자수입 · 증감사유 : 공매배당금(232,229천원) 예치기간('18.6.~'25.11.) 중 발생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0	323	0	0	0	323	323	
기타수입 /그외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0	323	0	0	0	323	323	· 세입내용 : 소송비용 회수수입 · 증감사유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지난연도 수입	14,400,000	12,600,000	10,000,000	0	0	2,600,000	△1,800,000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수입	14,400,000	12,600,000	10,000,000	0	0	2,600,000	△1,800,000	· 세입내용 :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액 징수 · 증감사유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편입 사유지 매각대금 체납액(2,454,219천원) 징수 등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기본경비		
사업목적		도세 체납액 징수를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2,693	23,790	11,290	0	0	12,500	-8,903	
국비		0					0	
도비	32,693	23,790	11,290			12,500	-8,903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500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201-01 사무관리비	·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 경정(12,500,000원) - 기정(11,290,000원)	= 12,500	

□ 예산요구 사유

- 도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징수활동 필요 경비
 - 체납액 징수 업무 지원 및 체납징수 업무 연찬회 등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3. :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자금교부(1~2차)
 - 2026. 03. : 금융정보 활용 체납징수를 위한 금융(신용)거래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 2026. 09. ~ 11. :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 21,258천원 · 체납징수 업무 연찬회 : 16,962천원 · 징수활동 사무용품 구입 : 4,869천원
2025	·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 1,210천원 · 체납징수 업무 연찬회 : 17,851천원 · 체납징수 동절기 활동복 : 4,999천원 · 징수활동 사무용품 구입 : 8,633천원
2026	· 금융거래정보서비스 수수료 : 3,2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3,089	43,089	-	-	
2025	32,693	32,693	-	-	
2026	11,290	3,200	-	8,0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징수과	징수기획팀장 이정환	담당자	행정7급 김수경	전화	2547
-----	-----	------------	-----	----------	----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체납자 실태조사반(기간제근로자 20명) 운영		
사업목적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한 체납안내 및 실태조사, 복지·일자리 연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76,014	175,337	385,337	0	0	-210,000	-200,67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6,014	175,337	385,337			-210,000	-200,67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0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 (경정)165,442,000원 - (기정)358,167,000원	= -192,725	
	201-01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반 차량 임차료 등 : (경정)7,655,000원 - (기정)20,690,000원	= -13,035	
	201-02 공공운영비	· 실태조사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경정)2,240,000원 - (기정)6,480,000원	= -4,240	

□ 예산요구 사유

-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반 운영비
 - 실태조사원 채용 및 교육, 인건비, 실태조사반 운영 안내 홍보, 공공운영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시비 편성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	-	-	-	-	-	-	-	-	2025. 9. 2026. 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1.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체납자 실태조사원 공개채용
- 2026. 03. ~ 2026. 11.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 2026. 05.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 2026. 12. ~ 2027. 0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실태조사반 운영 : 15명, 6개월 ※ 2024년부터 시비 100% · 체납액징수 실적 : 방문 3,851명 / 징수 2,095백만원(21,251건)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 5명
2025	· 실태조사반 운영 : 20명, 8개월 · 체납액징수 실적 : 방문 3,601명 / 징수 3,301백만원(35,991건)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 33명 / 일자리 연계 18명
2026	· 실태조사반 운영 : 20명, 8개월 · 체납액징수 실적 : 방문 2,542명 / 징수 2,125백만원(19,848건)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 7명 / 일자리 연계 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51,618	212,841	-	38,777	
2025	376,014	339,810	-	36,204	
2026	385,337	185,554	-	199,78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징수과	기동징수팀장 박재완	담당자	세무8급 이광열	전화	2637
-----	-----	------------	-----	----------	----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보조)

사업기간	2026. 8. ~ 2026. 1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체납자 실태조사반(기간제근로자 21명) 운영		
사업목적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한 체납안내 및 실태조사, 복지·일자리 연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10,000	0	0	0	210,000	210,000	
국비		0					0	
도비		63,000				63,000	63,000	
시비		147,000				147,000	147,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0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보조)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 기본급 : 11,730원*6시간*21명*92일 - 유급휴일수당 : 70,380원*21명*15일 - 출장여비 : 10,000원*9명*92일 - 4대보험료 : 168,143,860원*14%	= 189,966 = 135,975 = 22,170 = 8,280 = 23,541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 1,000,000원 · 운영비 : 1,000,000원 · 차량 및 장비 임차료 : 3,250,000원*4월 · 교육경비 : 794,000원	= 1,000 = 1,000 = 13,000 = 794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 유지관리비 : 30,000원*2대*4월 · 공공요금 및 제세 : 500,000원*4월 · 시설장비유지비 : 2,000,000원	= 240 = 2,000 = 2,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에 따른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	-	-	-	-	-	-	-	-	2025. 9. 2026. 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추진
 - 2026. 05.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 2026. 08. : 사업확대 및 결원 보충에 따른 체납자실태조사원 추가 채용
 - 2026. 08. ~ 2026. 11.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 2026. 12. ~ 2027. 0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징수과	기동징수팀장 박재완	담당자	세무8급 이광열	전화	2637
-----	-----	------------	-----	----------	----	------